

## 회의록

회의 일자	2024년 11월 17일	기록자(서기) 명	이지안
회의명	상임위원회의 8	위원회	외교통상
참석의원			
김단아, 김은설, 이지안			
회의 주제 (안건명)	국제개발협력법		
회의 내용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건 소개: 국제개발협력법에 사항 추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가 추가/투명성</li> <li>- 중요성 깨닫기</li> </ul> </li> <li>- 이유: 개발도상국</li> <li>- 제4조 기본원칙 (5가지)</li> <li>- [제4조] 4.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들끼리만</li> <li>- 대중들 관심 필요</li> </ul> </li> <li>- [제4조] 6항 추가 이유: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장해야한다는 내용 없음</li> <li>- <b>국제개발협력위원회</b>: 주요 정책 심의 및 조정, 관련 기관 간 협력 촉진.</li> </ul> </li> </ul> <p>● <b>“제3조(기본정신 및 목표) ①</b>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, 여성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의 인권향상, 성평등 실현,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.</p> <p>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</li> <li>2.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·조건의 개선</li> <li>3.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</li> <li>4.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</li> <li>5.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(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)의 달성에 대한 기여</li> <li>6.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li> </ol> <p>● <b>제4조(기본원칙) ①</b>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시행기관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은 국제개발협력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</li> <li>2.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</li> <li>3.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</li> <li>4.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</li> </ol>			

5.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

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,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

강다영 멘토 (피드백):

- 법률: “제 #조 #항”으로 구체화됨
- “제4조 1항”: 1호~5호 (sub - 세부/구체적으로 나타나있음.)
- 4호 안에 1항 있는것 잘못됨 — \* 수정 필요 \*
- 6호 안에 1항 있는것 잘못됨 — \* 수정 필요 \*

김보민 멘토 (피드백):

- 제4조 - 기본원칙
- 입청안이 제4조에 어울릴까 ...
- 내용 자체는 solid
- 법안 목적에 맞게 시행

김은설 의원 (제안):

- 지역 사회의 국제 개발 기본 협력법 기본 확장을 위해 위원회를 지역 사회로 확장/확대를 추가하면 구체화 될 수 있었던 것 같다.

김보민 멘토:

Q. 지역 사회 구성원 참여?

- 김단아 의원 A: 명칭 바꿔 ...

강다영 멘토:

- “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” — 평가 과정 및 시기 명시 中
- 의도 관해서 개발도상국 + 국민 참여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될지 고려 필요
  - Q. 지역 사회 구성원 참여 — 개발도상국의 국민?
    - 김단아 의원: A. 예.
  - 명칭보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전제하에 ...

김은설 의원:

- 제10조 구체화 하는 것도 추천
  - 이유: 내용 너무 비어있음.
  - “제7조(국제개발협력위원회)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·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, 외교부장관,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·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.
  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·의결한다.”
  - 김단아 의원: 이에 추가할 예정

강다영 멘토:

- 법의 취지가 선진국입장에서 개발도상국에게 협력 제공 ...
- 개발도상국의 국민 보장 — 침해/침범 선 X
- 개발을 위해서 협력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이다 보니 이를 명확히 하자
- 기여 가능

비고:

- [국제개발협력법 \(OFFICIAL\)](#)
- [김단아 의원 - 입법청원안 \(국제개발협력법\)](#)
- 다음주 주말 경 11/23 or 11/24, 다시 한 번 미팅 있을 예정 (김단아 의원님의 입법청원안 수정)
  - 또한, 위 회의 날에는 김서영 의원님의 입법청원안도 소개될 수 있음.